

백신접종(자궁경부암) 계약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하나로 의료재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구성원의 백신접종(자궁경부암)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료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접종기간) : 2011년 11월 01일 ~ 2012년 05월 31일

제2조 (접종대상) ① “을”은 “갑”의 구성원인 연세대학교 여학우(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 포함)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접종대상자”로 명시한다.

제3조 (접종수가) 접종수가는 실제 접종인원에 다음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자궁경부암 백신접종비: 1인당 1회 90,000원 (제약사:GSK, 제품명:서바릭스)

제4조 (실시장소) 접종은 “을”의 기관 소재지 종로본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및 강남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27)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실시조건) “을”은 접종대상자에게 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원 및 의료기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
2. “을”은 접종 실시에 따른 접종자의 사전 숙지사항 및 준비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종대상자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접종사후조치) ① “을”은 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실시 후, 접종 수검자에게 백신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갑” 및 접종 수검자에게 모든 변상과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갑”의 접종대상자는 제6조 1항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을”이 정한 내용 및 증빙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홍보) “을”은 “갑”이 지정해준 장소와 시간에 맞춰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실시일정) 1회차 접종 실시일정은 제1조에서 정한 검진기간 내에서 “갑”과 “을”이 적의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9조 (대금지급) “을”은 접종대상자에게 접종 당일 제3조에 해당하는 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접종대상자는 “을”의 청구에 비용을 지급기로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을”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을 준수하여, 접종관련 습득한 개인정보는 백신접종 업무에만 사용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해석이 다른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10 월 28 일

갑 : 서울특별시 신촌동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의료재단 이사장

이 경 료

(인)